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DC

SHINHAN
SECURITIES
Co.,Ltd.

Professional-Shinhan

세상에 프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프로는 많지 않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런 프로를 진정한 프로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정한 프로들의 회사, 신한투자증권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기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기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기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기업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조정운용제도"란 기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조정운용방법"이란 사전조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대기성자금"이란 기업자가 제6조에 따른 운용자금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 따라 보합계약은 금리연동형, 손익계약은 대기성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기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조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기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기타 운용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이하 "기록관리업무"라 합니다)를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이하 "채무탁 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위탁 등에 대해서는 부속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연금규약의 제출 및 변경)

-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 수리된 연금규약(별지) 및 노동부의 신고 수리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서면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회사 및 사용자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리업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회사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 정보방법별의 제공)

-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금융상품의 과거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방침 등을 비교 검토한 후 부속합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 방법별 정보를 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기업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의 구성·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2 (사용자에 대한 사전조정운용방법 정보 제공)

-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조정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조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시한 사전조정운용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1. 사전조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수익률
 - 나. 수수료 등 기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 예금지보번호 등 기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사전조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가능성
 3. 사전조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회사는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우편
 2. 교부
 3. 정보통신망
 4. 기타 회사가 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제6조3 (기업자에 대한 사전조정운용방법 정보 제공)

- ① 회사는 제6조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조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기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6조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제6조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기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조4 (기업자의 사전조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 ① 기업자는 제6조3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사전조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조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 ② 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조정운용방법을 제6조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조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기업자는 하나의 사전조정운용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조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자는 회사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조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조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가입자별로 운용자사항이며 상품 미선택시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제6조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 ①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제6조4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로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익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익영업일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2 제4항 각 호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 ④ 가입자가 제6조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한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로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부담금 납입의 영업일에 대가성자금으로 운용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익영업일에 대가성자금으로 운용
-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6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나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6조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회피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 때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6조7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①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나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⑥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 때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6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자사항"한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사용자 및 가입자 합의한 방법
-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계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자사항하도록 통지합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부속합정서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로 이하여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을 운용방법의 만기 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6조의6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 사항이 없는 경우 대가성자금으로 운용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 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사항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산의 현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자사항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자사항을 거절하고 운용자사항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 ★
제8조 (부담금의 납입)

-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인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며,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연금규약에 의해 선정 또는 결정된 법 제20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의 운용자사항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가입자가 연금규약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 중 가입자의 운용자사항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외에도 기존 퇴직금·충당금의 상각, 퇴직일시금·잔액(특정보험 포함)으로부터의 계약 이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부터의 계약 이전 및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급여 이전 등에 의한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계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계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하 "부담금 명세서"라 합니다)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부담금 납입 연체 시의 취급)

- ① 사용자는 제9조 제2항 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규약에 정하여진 기일(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날부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 연체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자산관리기계에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을 최고(독촉)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자산관리기계에 부담금의 납입을 지연 또는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연·연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연 연체 기간 중의 퇴직금의 지급은 개인별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납입 지연 연체된 부분에 대한 급여 및 지연 이자 등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자사항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자사항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자사항 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계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8조 ★ ★
(부담금의 납입)

납입할 금액 (부담금을 가입가입이 선택한 납입 주기일에 납부하며, 납입 연체시 규약상에 기재된 납입규정에 따라 연체 이자등을 납부

제11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회사는 이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다음 각호의 운용현황을 기안자에게 매년(회) 이상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간사기관이 총괄하는 경우에는 통지와 관련된 회사의 업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적립금 총액 및 자산관리 관련 적립금액
 2. 가입자의 운용방법별 투자금액, 투자비용, 운용수익률, 운용기간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2. 교부
 3. 정보통신망
 4. 기타 회사가 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규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2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번, 평균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이하 "가입자정보"라 한다)를 사면, 교부, 전회,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6조 제1항에 의한 가입자교육의 의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메일주소 정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오류 등에 의하여 이미 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가입자정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된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가입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회사는 이계약의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급여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간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 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양도·양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고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2호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제4호의 2의 경우 또는 제5호의 사업주의 휴업 실효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양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항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효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자(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합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별첨)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별첨)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7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부속합정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급여의 지급)

- ①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권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금규약에서 사용자가 미납된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담금 미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지급 또는 급여이전을 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 및 급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현금성 자산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 또는 이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요청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24조) 가입자 부담금 계정(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⑥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 수급자격에 갖추지 못한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를 위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미납한 추가 부담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의 적립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제1항과 같습니다.

제19조 (계약이전)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사용자로 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영업일"이라 한다) 이내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원이 필요한 경우 보원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영업일"이라 한다)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6조 ★ (가입자에 대한 교육)

관련법에 따라 매년(회) 이상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단,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교육 방식으로 진행

서면 교육(직접 전달) 대면 교육 등은 가입자 교육 이후 가입자 교육 확인서, 의 내용 기재 후 사용자 명판과 인감날인하여 신한투자증권 가입자 교육 담당자에게 제출
※ 이외의 교육은 가입자 교육 확인서, 교부

-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자기밀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자산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자기밀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4조(연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자연보상금은 운용자기밀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라 할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 이에 운용자기밀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제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자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0조 (계약의 중도해지)

- ①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 ②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일반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수수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재내용상 거짓이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 ① 사용자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이전,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22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사용자는 제도의 설정,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인감신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연책)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받아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지연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취급 또는 거래자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부속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취급 이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는 서면합의를 통해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계약의 승계)

- ① 사용자는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각각 기밀관리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제23조 ★ (인감신고)

퇴직연금 업무 처리시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5조 ★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계약 신청서 상에 명시된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으로 처리

1) 납입주기

- 결산월 기준 회계결산월 기준
- 응당일 기준 : 최초입금일 기준
- ex) 결산월 12월 : 1/1~12/31
- 응당일(4/1입금) : 4/1~3/31

2) 납입방법

- 사용자부담금 : 회사기별도납부
- 가입자부담금 : 가입자 자산채권
-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규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름

작업금 평잔금액	수수료율	비고 (제한적용 예시)
50억원이하	0.25 %	작업금 3,000억가정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0.23 %	50억×0.25% +(100억-50억)×0.23%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0.17 %	+(200억-100억)×0.17% +(1,000억-200억)×0.15%
2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0.15 %	+(2,000억-1,000억)×0.10% +(3,000억-2,000억)×0.08%
1,0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0.10 %	(수수료금액 341억)
2,000억원초과	0.08 %	

단, 퇴직임시금신탁(퇴직보형 및 퇴직신탁)에서 계약이전도는 순증 원본금액 (당사 유입금액 - 타사 유출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나. 단, 기록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20조): 없음
-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19조): 없음

② 제1항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10 %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15 %
11차년도 이후	20 %

- 주) 1. 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 단,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3. 제도 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 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제도의 경과년수 산출은 이 제도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시행일이 규약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도 시행일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도 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입우대 할인율은 제2항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가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는,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마을기업 공고일,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확인방법	할인적용방법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회사기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 6번째 숫자가 51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 (법인등록번호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회사기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지활기업	지활기업인증서 (지활센터발급) 또는 지원대·지활기업확인서 (중앙지활센터발급) 또는 지역지활센터 홈페이지 내 명단 확인	사용자가 지활센터에 또는 중앙지활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기 지역지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사용자 및 법인명(단체명/상호명)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이주부아카데미」 등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가입우대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제5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시기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수수료 명칭	납입주체	납입시기
운용관리수수료	사용자	계약응당일 또는 매시업연도 말 기준으로 1월 이내
중도해지수수료	사용자	중도해지시 별도납부
계약이전수수료	사용자	계약이전시 별도납부

단, 가입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 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사용자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의 경우 정함이 있는 경우 신탁회사에서 처리합니다.

③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회사에서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제항에서 정한 납입시기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해지시의 수수료 정산)

① 계약해지시에 정산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 전날까지의 부담금 및 적립금 평잔금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경과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2. 미청구된 기타수수료
해지일까지 미청구된 수수료 금액
- ② 회사는 사용자의 중도해지 신청시 수수료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기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순서)

① 회사는 계약서 제19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서로 자산을 매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하 각호의 매각순서는 회사와 사용자간 예시된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보통예금 등)
2.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적금, GIC, 원리금보장 E.B/DLB, RP, 증권금융 회사기 취급하는 예타금 등)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 운용방법
4.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5. 국내 집합투자증권(채권형)
6. 국내 집합투자증권(혼합형)
7.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 운용방법
8. 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9. 해외 집합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순서)
10.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 운용방법
11. 실적배당형 E.S/DLS
12. 실물유가증권(주식)
13. 실물유가증권(채권)

② 제1항의 자산매각순서에서 동 순위일 때 원리금보장상품은 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각합니다. 다만, 금리가 동일할 때는 매수일자가 우선하는 자산부터 매각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상품, 실물유가증권은 매수일자가 우선하는 자산부터 매각합니다.

제8조 (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영업일은 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해당 기한은 그 직전의 회사의 영업일에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부속합장사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부속합장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의 명판 및 사용인감날인

(인)

회 사

신한투자증권날인

(인)

별지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별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기업명 기재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 []년[]월[]일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하"운용관리계약서"라 합니다) 제1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법 제32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자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기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운용관리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해지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5조(교육내용)

1. 사용자 회사에 위탁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
나.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다. 담보대출, 중도인출, 자연 이자 등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마. 퇴직시 급여 지급 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정 등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바.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사.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 방법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추가 교육 사항
(다만, 내용과 다목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와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분식투자, 적립식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회사가 정합니다.

제6조(교육방법 및 횟수 등)

1.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기타
2. 서면에 의한 교육 중 교부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기업자에 대한 교육자료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기간, 장소, 일시 등 교육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교육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6조(교육방법 및 횟수 등)

1.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기타
2. 서면에 의한 교육 중 교부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기업자에 대한 교육자료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기간, 장소, 일시 등 교육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교육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7조(수수료)

1.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교육수수료

(단위: 원)

교육방법	수수료 금액	비고
집합교육	무료	회차당
온라인교육	무료	기업당
교부	무료	1권당
우편	무료	
전자우편	무료	
기타	무료	

2. 회사는 교육이 종료된 후 사용자에게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의 납부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당해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사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협조의무)

사용자는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회사의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1. 사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3.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당해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제10조(면책)

1. 회사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오류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서면(교부를 제외합니다)에 의한 교육방법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공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 교육자료를 발송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교육 재유탁)

1. 회사는 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재유탁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유탁한 경우 유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1. 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의 종료일 이전까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협조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4. 수수료 지급 등 이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운송관리 계약에 대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관할법원)

사용자, 기업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기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기업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자의 주소지 또는 기업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기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 및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의 명판 및 사용인감 날인

(인)

회 사

신원투자증권 날인

(인)